

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
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2706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8. 3. 27.

발의자 : 안규백 · 이용득 · 전현희

전혜숙 · 이수혁 · 신창현

김진표 · 권미혁 · 김상희

박정 · 윤후덕 · 김병기

김성수 · 설훈 · 임종성

송옥주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,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.

현행법은 위원회의 위원,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(職)에 있었던 사람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.

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 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.

이에 별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
별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, 직무상
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
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
고자 함(안 제49조제1항).

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
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
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항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49조(별 칙) ①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1천만원</u>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. | 제49조(별 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천만원</u> -----. |